

화장품, 식품 관련 중국 진출 시 법적 유의사항

2022. 2. 24.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나승복 변호사

Partner

법무법인(유) 화우

sbn@hwawoo.com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국 북경대학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여, 2003년 이래 법무법인 화우에서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컨텐츠진흥원 해외진출상담센터 자문위원, 한중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을 위하여 투자, IPO, M&A, 기업자문, 중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목차

I

화장품

1. 관련 중국 법령
2. 수입화장품의 등록/신고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관리 절차
4. 수입화장품의 유통
5. 법적 유의사항

II


식품

1. 관련 중국 법령
2.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3.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4. 수입식품의 유통
5. 법적 유의사항



I

화장품

1. 관련 중국 법령
 2. 수입화장품의 등록/신고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관리 절차
 4. 수입화장품의 유통
 5. 법적 유의사항
- 

1. 관련 중국 법령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化妆品监督管理条例 (2021. 1. 1.)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2022. 1. 1.)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 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2018. 11. 23.)
- 화장품 등록신고자료 관리규정 /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2021. 5. 1.)
-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자료 관리규정 /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2021. 5. 1.)
- 사용중인 화장품 원료 목록 / 已使用化妆品原料目录 (2021. 5. 1.)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 化妆品标签管理办法 (2022. 5. 1. 시행 예정)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 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 (2022. 7. 1. 시행 예정)

2. 수입화장품의 등록/신고

등록제

✓ 관리 방식

- ① 신청인의 등록 신청
- ② 약품감독관리부서 심사
- ③ 등록여부 결정
- ④ 약 120 영업일 소요

✓ 적용 대상

- ▶ **특수화장품**
(염색, 파마, 미백, 썬케어, 탈모방지 화장품 및 신기능을 홍보하는 화장품)
- ▶ **고위험성 화장품 新 원료**
(부패방지, 착색, 염색, 미백기능 등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

2. 수입화장품의 등록/신고

신고제

✓ 관리 방식

- ① 신고인의 신고(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 자료 제출 필요)
- ②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신고 접수

✓ 적용 대상

- ▶ 일반 화장품
(특수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
- ▶ 기타 화장품 신 원료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1) 등록/신고 사전 준비

☑ 중국 내 책임자 지명

▶ 지정 필수

- 신청인은 중국 내 법인(이하 “중국 책임자”) 지정 필요(*경험, 책임감 있는 중국업체 지정 필요)

▶ 중국 책임자의 의무

- 등록인/신고인 명의로 등록/신고업무 수행
- 등록인/신고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이상반응 검사, 신원료의 안전검사 및 보고업무 수행
- 등록인/신고인을 협조하여 제품 리콜 수행
- 등록인/신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품질안전책임 부담
-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감독검사업무 협조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1) 등록/신고 사전 준비

✓ 안전평가

- 신청인은 국가약품감독국에서 공표한 검사기구를 선정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화장품은 기존에는 동물실험 검사를 거쳐야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이 없이 수입 가능

✓ 화장품 효능 홍보 및 평가

- 신청인은 스스로 또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화장품효능을 평가하고 국가약품감독국이 지정한 사이트에 그 개요를 업로드

✓ 화장품 라벨

- 중문라벨만 사용하거나, 중문라벨을 추가로 부착 가능
- 추가로 부착 시에는 기존 라벨과 내용이 일치해야 함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2) 등록/신고 (국가약품감독국)

☑ 신고제 제품(기본 제출서류)

- 제품 조제법 또는 모든 성분
- 제품 조제법 설명서(신 원료를 사용한 수입화장품은 모든 원료를 밝혀야 함)
- 제품이 적용된 품질 및 안전기준
- 제품포장(제품 라벨, 설명서 포함)
- 제품검사보고서
- 검사기구가 확인한 미개봉 시판 샘플
- 제품안전평가자료
- (최초 신청 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췄고 화장품 이상반응 검사 및 평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이 생산국에서 이미 출시, 판매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중국시장 전용 제품이거나 또는 생산국에서의 출시, 판매 증빙 제출이 불가 시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시험자료 제출)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2) 등록/신고 (국가약품감독국)

☑ 등록제 제품(추가 제출서류)

- 생산기술 개요 및 개요도
- 국가약품감독국이 인가한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서
- 인가된 검사기구가 확인한 미개봉 시판샘플
- 제품기술요구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2) 등록/신고 (국가약품감독국)

✔ 기술평가심사

▶ 등록제 제품(사전 평가)

- 기술평가심사기관은 신청인 제출자료 접수일부터 90 영업일 내에 평가심사의견 제출

▶ 신고제 제품(사후 평가)

- 신고절차 완료 후 랜덤 평가

✔ 심사 및 결정

▶ 등록제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술평가의견을 받은 날부터 20 영업일 내 등록 여부 결정

▶ 신고제

- 신고자료를 제출하면 신고절차 완료됨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3) 세관 검사 검역

✓ 입국물품 검사검역증명

- 현장검사, 랜덤검사, 라벨검사, 실험실검사 등 포함
- 검역 통과 시 <입국물품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며, 위 증명이 있어야만 판매, 사용 가능

✓ 랜덤검사

- ▶ 위에서 랜덤검사가 강화되는 경우
 - 최초 수입하는 경우
 - 기존에 품질안전문제가 있는 경우
 - 수입물량이 많은 경우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4) 후속 관리감독

✓ 개괄

- 등록증 5년 유효기간 만기 뒤 연장 필요
- 현장검사 시 협조 필요
- 등록증 양도 금지

✓ 변경 등록/ 신고

▶ 등록제 화장품

- 안전성, 기능의 변화와 무관한 변경사항은 신고
- 안전성과 관련되거나, 생산기술, 기능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 필요
- 제품 명칭, 조제법이 변경되어 실제로 새로운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 등록신청

3. 수입화장품의 등록, 신고 및 관리 절차

(4) 후속 관리감독

④ 변경 등록/ 신고

▶ 신고제 화장품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명칭 변경 불가
-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효능 변경 불가
- 임의로 제품 조제법 변경 불가(단, 원료 출처 변경 등으로 조제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신고인 및 중국 책임자 주소 변경으로 신고관리부서가 변경 시: 재신고 필요
즉, 신고 후에는, 제품명칭, 기능, 조제법 등 화장품정보와 직접 관련 내용은 임의로 변경 불가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고 필요.

4. 수입화장품의 유통

(1) 유통기업의 관련

- 화장품유통기업 : 특별한 경영허가증 불요
- 화장품 등록/신고자료, 적법한 수입 및 검역절차 등을 갖춘 화장품만 유통 가능
- 화장품유통기업은 제품공급자의 자격증빙, 화장품 등록/신고 여부, 제품출고 검사합격증명을 확인, 기록하여 관련 증빙 보존 필요
- 법령 및 화장품라벨 표시사항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운송 및 정기 검사 시행
변질 또는 사용기간이 만 기된 제품 처리

(2) 온라인플랫폼 경영자 관련

- 온라인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경영업체 실명등기를 하고 화장품경영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
- 처벌사례: 2021. 7. 복건성 복주시 소재 무역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특수화장품 등록증이 없는 염색제품을 판매'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의거 과태료(5만 위안) 처벌

4. 수입화장품의 유통

(3)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 상무부는 매년 <수입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전자상거래 소매제품 리스트/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를 공표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수입 가능한 제품을 규정
- 2019년 기준으로, 향수, 입술/눈가 화장품 등 품목이 포함됨

5. 법적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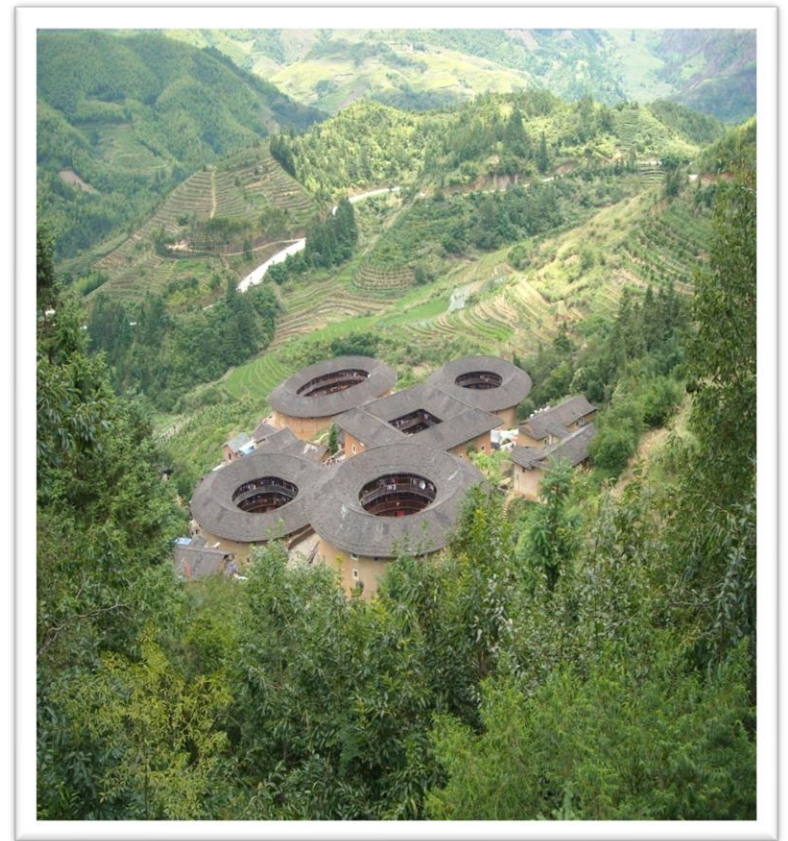
- ▶ **화장품의 등록/신고 등 법령 준수는 중국진출의 첫 단추**
 - 사업성 평가: 이익의 다소 문제
 - 법률적 평가: 사업의 가부 문제 **화장품의 상표, 디자인 등 권리보호 강화**
- ▶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경영능력 사전 검토**
- ▶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권리의무 조항 철저 검토 및 반영**
 - 대금, 기간, 인도, 검수
 -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해지, 손해배상, 적용법, 분쟁해결

해외출장목록 (2003-2018) Overseas Business Trip List (2003-2018)





雲南省 麗江，玉龍雪山




福建 土樓 – 2008年世界文化遗产登載



II

식품

1. 관련 중국 법령
 2.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3.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4. 수입식품의 유통
 5. 법적 유의사항
- 

1. 관련 중국 법령

- 식품안전법 / 食品安全法 (2021. 4. 29.)
-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 食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2017. 11. 17.)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食品安全法实施条例 (2019. 12. 1.)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2. 1. 1.)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2022. 1. 1.)
-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관리방법 / 食品生产经营监督检查管理办法 (2022. 3 15. 시행 예정)

2.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1) 의무등록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필수
- 주무기관: 세관총서

(2) 적용대상

-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 제외)

2.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3) 등록요건

- 생산국(지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중국 세관총서의 효력동등성 평가, 심사에 통과
- 생산국(지역) 주무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주무당국의 효과적인 관리감독
- 효과적인 식품안전위생관리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
- 생산국(지역)에서 적법하게 생산, 수출
-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령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함을 보증
- 세관총서와 생산국(지역) 주무당국간에 정한 검사검역요건에 부합

2.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4) 등록 유형

▶ 공식추천 등록제

- 세관총서에서 정한 18개류 식품의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주무부서가 중국 세관총서에 공식적으로 추천하여 등록(육류, 수산물, 유제품, 벌꿀 제품, 견과류, 건조과일,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 자발적 등록제

- ‘공식추천 등록제’ 적용대상 이외의 생산기업에 적용
-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며, 공식추천 등록제에 비하면 절차나 제출서류가 간소화됨

(5)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등록 유효기간 만기 3~6개월 전에 연장신청

3.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1) 수입식품 검사

- 세관의 심사통과 시에만 수입 가능
- 검사항목은 해외생산기업등록, 수출입자등록, 수입동식물검역, 현장조사, 수입 및 판매기록검사 등 포함

(2)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평가

- ▶ **아래의 경우, 세관은 외국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평가 가능**
 - 해당 국가가 중국에 최초로 해당 종류 식품의 수출을 신청 시
 -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동식물검역법령, 조직기구 등에 중대 변동이 발생 시
 - 해당 국가에 중대한 동식물전염병이나 식품안전사건이 발생 시 등

3.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3) 통제조치

- 위험심사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또는 금지 조치
- 식품안전위험이 통제가능 수준으로 감소 시 해지 가능

(4) 통제사유

- 해외생산국에 중대한 동식물전염병의 발생 또는 식품안전시스템에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대중국 수출식품의 안전보장 불가 시
- 수입식품이 검역전염병 오염이나 검역전염병 매개체가 되어 효과적인 처리 불가능 시
- 식품에 중대한 안전우려가 있을 시 등

4. 수입식품의 유통

식품경영허가증 보유업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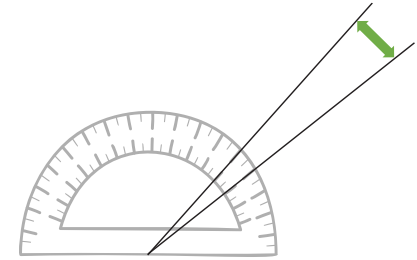
- 중국 내 유통을 위해서는 식품경영허가증(유효기간 5년) 취득 필수
식품경영허가증이 있는 업체를 통한 유통 필수
- 경영장소 당 하나의 식품경영허가증 취득 필수
- 서면심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식품경영허가증 발급(통상 20일 이내, 연장 시 30일)
- 수입업자는 해외생산업체의 식품안전위험 통제조치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및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수입식품의 리콜 발생 시, 수입업자는 식품안전감독부서와 수출입검역기관에 보고 필요

5. 법적 유의사항

- ▶ **식품의 등록/신고 등 법령 준수는 중국진출의 첫 단추**
 - 법률적 평가: 사업의 가부 문제
- ▶ **식품의 상표, 디자인 등 권리보호 강화**
- ▶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인허가, 경영능력 사전 검토**
- ▶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권리의무 조항 철저 검토 및 반영**
 - 대금, 기간, 인도, 검수
 -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해지, 손해배상, 적용법, 분쟁해결

- 精神一到(度) 何事不成
[정신일'도' 하사불성]

위험은 사소한 한 구절, 한 문장에서 비롯 /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有志者, 事竟成
[유지자 사경성]

뜻이 있는 자는 필경 일을 이루어낸다.



범업(範曄, 후한서)

Q&A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